

## 미국대학의 언론법 교육현황

염규호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교수

### 1. 서론

미국 언론학(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의 역사는 1869년 처음으로 저널리즘 교육을 시도했던 워싱턴 대학(Washington College, 지금은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에서 찾을 수 있다.1) 미국의 초기 언론학 교과과정에 특기할 점은 언론법이 중요한 과목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즉 최초의 종합적인 저널리즘 커리큘럼으로 소개 됐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휘튼 비즈니스 대학의 1893~1894년 교과과정에는 명예훼손법(Law of Libel)이 개설되어 학점을 인정하였다.2)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총장 Charles W. Eliot은 Joseph Pulitzer의 신문대학 설립 제의를 받고 준비한 교과 과정 안에 언론법(The Law of Journalism)을 주요과목으로 포함시켰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 최초로 독립적인 신문대학을 인정한 미주리 대학교의 1908년 전문 직업과목 가운데 "신문법"(Newspaper Jurisprudence)이 들어 있다."3)

1910~1920년대에 저널리즘 과를 정식으로 설립해서 강의를 했던 스탠포드, 일리노이 그리고 미네소타 대학교에서도 "신문과 잡지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언론법 강좌를 개설했다.4)

왜 미국은 언론학 특히 신문학의 초기부터 언론법을 주요 과목으로 인정해 강의를 하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콜롬비아 대학교에 신문대학을 세운 Pulitzer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1904년 신문대학을 세우려는 그의 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에 나름대로 답을 하면서 Pulitzer는 언론법의 중요성을 저널리즘의 교육과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법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분야의 법을 저널리즘 학생이 마스터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실 필요하지도 않다... 정규 법과학생은 법의 원칙뿐만 아니라 실제와 전례를 배워야 한다. 그러나 저널리스트는 일반 국민의 권리와 복리에 직접 관련이 있는 법의 원칙과 이론 그리고 응용 등을 배우면 충분하다."5)

Pulitzer는 덧붙여 쓰기를 변호사업을 미래의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저널리즘 전공 학생에게 필요치 않는 것은 때고 알 필요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주의깊게 전문적으로 꾸민 언론법 과목은 전적으로 실용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최고로 유용한 것이다. 어느 과목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법은 문명의 토대요, 자유의 규제요, 질서의 수호자이며 정부의 기본 틀이다. 한나라의 정의를 공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정의야말로 모든 정부의 최고의 시험대라고 하겠다."6)

Pulitzer는 교과과정으로서 언론법의 실질적인 가치는 무엇보다도 언론인이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취재 보도를 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특수한 법률 지식을 갖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보다 넓게는 언론법을 공부함으로써 미국의 법제도와 법률기관의 기능과 목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다.7)

100년이 넘는 미국의 언론학 교육에서 언론법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정식인가 받은 언론학과와 교과과정에 언론법은 거의 대부분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다. 즉 1996년에 나온 미국의 저널리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정식 인정받은(accredited) 저널리즘 프로그램 중에서 92%가 그리고 비인가된(non-accredited) 프로그램 중의 83%가 언론법(Journalism Law)을 저널리즘 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요구하고 있다.8)

이 같은 언론법의 비중은 결코 놀라운 것은 아니다. 언론학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토론회나 회의 그리고 보고서를 통해서 언급되는 교과과정은 언론학에 필요한 지식의 영역 중에서 "병적인 구체적인 문제"를 학생들이 알아야 할 중요점으로 꼽고 있다.9)

본 논문에서 저자는 1985년 이후 미국의 언론법 교수로서 강의, 연구 그리고 언론법 관련 단체에 관여하면서 느낀 경험을 중심으로 미국의 언론학 교과과정 속에서 언론법의 교육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 언론법의 개념을 파악, 정의하고 언론법의 강의 개설을 알아보면서 언론법이 최근에는 반드시 언론학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강의의 성격과 언론법 교수 등의 자격 등에 대한 현황과 언론법 교과서의 출판과 교과서 이용의 장·단점과 언론법의 강의세목(Syllabus)을 통해서 실제 어떠한 주제가 주로 강의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물론 이 논문은 미국의 언론법 교수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필자가 미국언론학회(AEJMC)의 언론법 분과와 국제언론학회(ICA)의 커뮤니케이션법제 분과의 책임을 맡아, 지난 수년간 관여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Media Law Notes(AEJMC의 언론법 분과 뉴스레터)와 학술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된 언론법 강좌에 대한 페이퍼를 통해서 읽은 자료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다.

## II. 언론법의 개념과 정의

특별히 언론에만 국한해서 적용되는 특수한 법이 미국에는 거의 없다. 어느 면에서 "언론법"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마치 일반 미국민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특별한 법이 언론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은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수정헌법 제 1 조에 보장된 언론 표현의 자유가 미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지 언론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면 당연한 것이다. 지극히 제한된 경우에 취재원 보호나 경찰 등의 법 집행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습수색 등으로부터 언론사를 보호하는 법 등이 제정, 집행되고 있음은 하나의 예외이지 미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10)

그리고 TV, 라디오, 케이블 방송에 대한 연방법의 규제는 특수한 방송의 성격과 책임 등에 근거한 언론의 자유와 공적인 이익(public interests)의 균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11) 요컨대 제한된 몇 개의 법을 제외하고 미국의 언론에 영향을 미치는 법은 수세기에 걸쳐서 발전된 다방면의 일반적인 법규제의 산물이다.

예를 든다면, 명예훼손 법이 언론사를 그 주요대상으로 해서 생긴 것은 아니다. 물론 "미국에서 명예훼손은 언론사에 대한 가장 최초의 소송사건의 사유가 됐으며, 아직도 언론이 당면하는 가장

흔한 법적인 위협이다. 분명 명예훼손은 직업 언론인들에게 하나의 직업상의 위협이라고 하겠다."12) 그러나 명예훼손 법은 하나의 민사적인 배상이 관여된 불법행위의 일부로 수백 년에 걸쳐 이미 존재해 왔다. 사실 미국의 법대에서는 명예훼손이나 그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침해사건 등이 불법행위(torts)라는 과목으로 법대 1학년 학생들에게 강의되고 있다.13)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헌법을 강의하는 정치학과나 법대 등에서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 지고 있다. Yale 법대의 경우, 헌 법학 과목과 "Bill of Rights"라는 과목 등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대법원판례 등을 분석 강의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깊이 있는 언론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직접적인 강좌로는 "The First Amendment "와 "Free Speech, Telecommunications and Cyberspace" 등이 있다.14)

"언론법"이라는 과목은 어느 면에서 오랫동안 여러 학문 분야에서 강의되는 언론에 관한 규제법을 중심으로 생긴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언론학의 시작과 더불어서 Pulitzer 의 주장대로 보다 언론에 관련된 전문적인 규제를 이해하는 것이 주안점이었다. "언론법은 미래의 기자나 편집인들로 하여금 직업상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가르치는데 주목적이 있다."15)

언론법이 언론학의 시작과 더불어 주목을 끌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언론산업의 성장과 그에 수반된 법적인 제문제들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때문이라고 하겠다.

19 세기 후반에 나온 Samuel Merrill 의 Newspaper Libel 은 미국 언론법(Journalistic Law)의 창시적인 것으로 "병원, 의회와 법 평론가들이 점점 불법행위, 재산권, 계약 그리고 다른 법분야와 관련된 언론의 특별한 점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었다.16)

미국에서 언론사의 특수한 법적 문제들에 대한 이같은 인식의 증가는 신문사들의 갑작스런 증가와 이에 따라 신문이 일반사람들의 사적, 공적인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 따른 것이었다. 황색 저널리즘에 따른 프라이버시권리를 주장하는 논문이 1890 년에 Harvard Law Review 에 나왔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17)

개념적으로 "언론법"의 정의는 한 마디로 언론의 자유와 법적인 규제 사이의 긴장과 균형을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정보를 수집 전달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명예훼손을 포함해 정보접근권 그리고 언론의 기업관련 규제도 해당된다. 최근에는 광고, 홍보(PR)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규제 등이 주요한 논제로 언론법에 부각되고 있다.

### III. 언론법의 커리큘럼

학부의 언론학에 있어 언론법의 커리큘럼은 언론학과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학부의 학생들에게 언론법 강좌는 매개 정식으로 언론법을 배우는 유일한 기회이다.

그래서 언론과 관련된 주요 주제를 강의하고 있다. 최근의 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언론법 교수가 강의하는 10 개의 주요 주제를 분석한 결과, 90% 이상의 교수가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언론법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명예훼손, 수정헌법 제 1 조 이론, 자유언론과 공정한 재판, 프라이버시침해, 정보접근권, 저작권, 방송규제, 취재원 비밀의 보호권, 광고 등이 열거되고 있다.18) 흥미로운 것은 많은 언론법 교수들이 케이블 TV 와 뉴미디어에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19)

필자 학교의 경우 신문 방송을 중심으로 예비 언론인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인문사회과목 수강을 강조하고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게 하는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언론법은 전공을 불문하고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다. "MCO 402: Mass Communication Law"로 명칭된 필자 학교의 언론법 과목의 목적은 "신문과 라디오 TV 방송의 권리, 특권과 의무에 대한 법적인 면"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16주에 걸쳐 매주 3시간씩 3학점 언론법 강의를 하고 있다. 필자의 강의개요에 나와 있는 강의목적 등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미국언론법의 교과과정의 한 실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언론법 강의의 기본 가설은 미국의 언론 자유와 관련된 법적인 보호와 제약을 인지하는 것이다. 즉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구제를 요구할 때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언론이 어떤 것을 발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언론 전공 학생들은 알아야 한다. 언론법은 항상 정지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변하는 원칙들이며 이는 법원의 해석과 적용을 받아서 언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미국언론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령과 판결들이 언론법 강의의 주요 초점이 되고 있다.

한편 필자는 미국법 위주의 언론법 강의와 연구에서 탈피하여 미국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언론의 법규제에 대한 비교국제법적인 문제를 강의에 넣고 있다. 필자는 미국의 언론법이 국제적인 영향을 여러모로 미치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 미국 언론기관의 병적인 문제점을 고려해서 MCO 402 과목에 이를 추가해 새로이 나타나는 국제적인 언론법 논제를 검토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미국법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생각이며, 이에 이 같은 언론법 강의의 새로운 방법을 1993년 미국 언론학회의 언론법 Newsletter 인 Media Law Notes 를 통해서 주장한 바 있다.<sup>20)</sup>

강의방법은 주로 기본적인 법원칙이나 이론을 강의시간의 주제에 따라 학생들에게 소개, 설명하고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분석한다. 학생들에게 매시간마다 주 교과서와 부교재(필자가 매 학기마다 준비한)의 예정된 읽을 과제를 내주고 있다. 물론 이 수업준비의 주된 것은 교과서에 언급된 주요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며 따로 필자가 선정한 주요 주 법원이나 연방고등 법원의 판결을 읽고 강의시간에 토의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학기의 언론법 강의의 명예훼손 주제에는 70여 개가 넘는 법원판결을 분석 토론하고 있다. 여기에는 New York Times CO. v. Sullivan,<sup>21)</sup> Gertz v. Robert Welch, inC.,<sup>22)</sup> Philadelphia Newspapers v. Hepps<sup>23)</sup>와 Milkovich v. Lorain Journal<sup>4)</sup>과 같은 중요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문을 읽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Neutral reportage"(중립 보도)를 수립한 제 2 순회 연방고등법원 사건인 Edwards J. National Audubon Society 와 "innocent construction"(명예훼손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 원칙을 인정한 일리노이주 대법원 판결인 John v. Tribune Co. <sup>26)</sup>와 Chapski v. Copley Press<sup>27)</sup>도 학생들에게 case briefing(판결문 요약)을 숙제로 내주고 수업 중에 토론을 하게 하고 있다.

미국 언론법의 비교국제법적인 관점에서 필자는 영국, 호주, 인도 등의 법원 판례들을 소개 분석하고 어떻게 미국의 언론법이 외국의 판결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와 국제법상의 명예훼손 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교재를 읽을 것을 요하고 있다. 즉 Peter F Carter-Ruck 과 Harvey N.A. Starte 가 쓴 Carter-Ruck on Libel and Slander (5th ed. 1997)의 chapter 25 와 26 을 학생들에게 권하고 있다.

다국적 미국언론사와 관련된 판결들도 강의의 토론주제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미국의 언론사가 영국의 법원에 소송을 당한 후 영국의 법원판결을 미국의 법에서 인정, 집행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 사건 28)과, 이와 유사하지만 또 다른 각도의 미국 수정헌법 제 1 조와 외국 언론법과의 마찰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사건 29)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외국정부의 발표문을 미국언론이 보도해 명예훼손이 된 경우, 공정보도특권(fair report privilege)을 통해 언론기관이 면책되는가 하는 문제로 필자가 강의에서 다루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이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토론 사건 중에 한국의 국가안전기획부가 낸 미국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대한 발표문으로 생긴 Lee v. Dong-A Ilbo 사건이 있다. 30)

그리고 이 사건과 매우 상치된 판결을 최근 강의에서 동시에 다루고 있다.31)

필자의 언론법 과목에서 다루는 주제는 일반 다른 언론법 교수들과 대동소이하다. 언론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소개하는 이론, 원칙중심의 "표현의 자유 과거와 현재"를 학기 첫 2 주에 강의한다.

다음에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3 주에 걸쳐 다루고 기자의 취재원 보호특권을 1 주, 음란물규제 1 주, 법정취재와 언론법을 1 주 반, 정보 접근권을 1 주 반, 미디어 액세스권 1 주, 광고법 1 주 반, 방송법을 3 주~3 주 반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있다.

강의방법은 주로 교수가 주제에 대한 일반 원칙과 이론을 소피하고 미국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중요한 관련 연방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주대법원, 고등법원 판결을 이용해 실제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고 규제되는지를 알아본다. 물론 필자의 역할은 학생들의 판례분석을 비판적으로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며 판결들이 왜 언론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나왔는지를 정치적, 사회적, 법적인 이해관계를 광범위하게 연결, 이해시켜 주는 것이다.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학생이 기자 혹은 편집인, 신문 방송의 경영인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읽은 판결을 적용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데, 판결에 대한 "사실개요, 결정과 판결 이유" 등을 요약(briefing)하게 하고 퀴즈시험을 실시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기말보고서를 시험 외에 따로 부과하고 있는데, 기말보고서의 주제는 일반과정 연구보고서와는 매우 다르게 실시한다. 왜냐하면 필자의 기말보고서 목적은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것을 실제 상황에 어느 정도 적용하는가를 알아보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에 준비한 기말보고서에 대한 필자의 과제지시를 소개해 본다:

기말보고서 과제는 "New York Times"에서 "National Enquirer", "60Minutes"에서 "Entertainment Tonight"쇼를 포함해서, 학생이 선택한 언론매체를 유심히 관찰해 잠재적인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언론의 잠재적인 불법행위(tort)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소송사건을 일으킬 상황을 찾는 것이다.

기말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을 다루어야 한다. (1)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소송사건을 생기게 하는 언사(statements)가 정확히 무엇인가? (2) 사건해결에 열쇠가 된 중요쟁점은 무엇인가? (3) 원고나 피고측의 변호사들이 사실심 판사 앞에서 약식판결을 신청할

때 인용할 주요 판례들은 무엇인가? (4) 학생이 원고의 변호사인 경우에 학생이 당면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5) 마찬가지로 학생이 만일 피고의 변호사인 경우 어떠한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논제일 것인가? (6) 이 잠정적인 소송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말보고서의 평가기준은 선택한 기사의 적절함, 법의 분석력(인용한 사건에 중점을 두면서), 사건결정의 토론의 질(주요 판례를 어떻게 인용하는가를 중심으로)과 논문의 구성과 문장력이다. (이 마지막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2~3 면의 초안을 쓸 시간을 갖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초안을 읽고 다듬지도 않고서 제출해서는 안된다.) 논문은 적절히 자료출처를 밝혀야 한다. 논문의 각주를 준비하는 지침서로는 1996년에 나온 The Blue book :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16th ed.)을 써야한다.

잠정적인 명예훼손 혹은 프라이버시사건이 나올 신문 혹은 잡지기사의 사본을 논문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만일 TV 나 라디오 프로그램인 경우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기술, 또는 보다 더 좋은 것은 프로그램의 방송원고를 구해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 IV. 언론법의 교재: 교과서와 부교재

미국의 언론법 교과서는 현재 어느 면에서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다. 1920 년대에 언론학 전공학생을 위해 나온 William G. Hale 의 The Law of the Press(1923)와 William R. Arthur 와 Ralph L. Crosman 의 The Law of Newspapers(1928)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언론법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비록 70 년이 넘는 미국의 언론법 교과서 출판의 역사라고 해도 현재와 같은 언론법 교과서의 붐은 아마도 지난 1960 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1969 년에 나온 판례와 평석 중심의 Donald M. Gillmor 와 Jerome A. Barren 의 Mass Communication Law(1969)와 언론 판례를 쉽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Harold L. Nelson 과 Dwight L. Teeter 의 Law of Mass Communication(1969)가 대표적인 언론법 교재였다. 특히 Gillmor 와 Barren 의 책은 언론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법대학생들을 위해서 쓴 판례교재였다. 당시에 언론법을 따로 강의하는 법대가 없는 현실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서문에서 Gillmor 와 Barren 은 자신들의 학문적인 배경이 언론학(Gillmor)과 법학(Barren)임을 상기시키면서 책의 공저자는 "법대의 언론법 강좌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저널리즘 학교에 새롭고 읽기 쉬운 책을 제공하는 것이 저자들의 목적이었다."고 썼다. 1976 년에 Stanford 법대의 Marc A. Franklin 교수의 Mass Media Law 가 법대교과서 전문출판사인 Foundation Press 를 통해서 나온 것은 분명 언론법이 미국에서 중요한 대학의 과목이 되었음을 상징 하는 것이었다.

현재 언론법 교과서는 매년 20 여 개가 넘는 주제로 책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세분해서 방송법, PR 과 광고법 등의 책이 각 전공학생들의 언론법 수요에 부응해 나오고 있다.

대개의 언론법 교과서 저자들은 언론학 교수들이다. 물론 Jerome Barron 이나 Marc Franklin 은 법대 교수로 예외라고 하겠다. 가장 최근에 나온 communication and the Law(1998)는 필자가 미국의 언론법 교수들과 함께 Communication Law Writers Group 으로서 쓴 것으로 실제 언론전공 학생들의 주요 관심과 요구를 감안해서 쓴 것이다. 언론법 교과서 출판의 현실은 Communication and the Law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언론법이 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 수정헌법 제 1 조에서 규제와 법령, 계약법에서 헌법에 이르기까지 법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매년 의회, 규제 기관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언론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찾아서 이해해야 할 많은 정보를 내놓고 있다. 언론법을 구성하는 수많은 자료와 법의 변화성 때문에 언론법 책이 독자의 손에 닿을 때에는 이미 낡은 것이 된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 책의 중요성은 한마디로 언론법의 변화를 시간에 맞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32)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학부학생들의 85%가 언론법 교수들이 집필한 언론법 교과서에 만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언론법 교과서의 주요 장점은 읽기 쉽고 종합적이고 학부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있고 주제를 깊고 광범위하게 다루며 판결 중심의 책보다는 판례를 요약 설명하는 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쓰고 있다. 설문응답자들은 법을 어떻게 보다 잘 설명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에 차트와 그래프 등을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33)

필자는 매년 새로운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따로 부교재로 필자가 만든 자료집(주로 주요 판결문과 논문 등을 모은, 최근 신문 잡지의 기사를 포함해서)을 쓰고 있다. 또한 Arizona Reporter's handbook on Media Law(4th ed. 1993)와 West Publishing Co. 에서 나온 Mass communication in a Nutshell(4th ed. 1994)을 사용하고 있다. 주 교과서는 communication and the Law(1998)이다.

일반적인 언론법 교과서 이외에 각 주마다 주의 언론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책을 부교재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일반 언론법에 관한 서적은 주로 면방판례 등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1950 년대에 나온 Norris e. Davis 의 The Press and the Law in Texas (1956)와 William F. Swindler 의 Nebraska Newspaper Law(1958)는 주의 언론법에 대한 관심이 상당기간 동안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가장 특기할 만한 주 언론법책 출판은 1990 년대 초반에 New Forums Press 에서 기획해서 펴낸 New Forums State Law Series 의 주 언론법 책들이라고 하겠다. 아직 모든 주에 대한 책이 나온 것은 아니나 Georgia, Illinois, New Mexico, Ohio 등의 law series 는 최근의 주법을 알 수 있는 값진 자료이다.

필자가 속해 있는 학교의 경우 학부 대학원생을 필수과목으로 한 Mass Communication Law 과목 외에 애리조나 언론법을 중심으로 한 "Arizona Media Law"를 따로 만들어 강의하고 있다. 이는 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깊이있게 애리조나법을 분석한다. 주 언론법을 따로 강의하는 언론학교로서는 아마 필자의 대학이 예외적이라고 하겠다.

책이나 자료집 이외에 필자는 American Bar Association(미국 변호사 협회) 등에서 나온 수정헌법 제 1 조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와 미국 대법원의 언론법 관련 사건에서 변호사들이 변론한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판결내용을 토론하면서 시청한다. 그리고 MSNBC 와 Court TV 에서 나오는 언론법 관련 TV program 을 녹음해서 강의교재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 부교재는 현실감 있는 언론법의 문제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자주 언론 관련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와 판사를 초대해서 초빙강의를 하게 하고 있다. 특히 언론전문 변호사인 Dan Barr, Terrance C. Mead 와 David Bodney 등이 필자의 강의에 와서 직접 관여한 언론 사건의 실제 판결 얘기를 자주 전해주곤 한다.

그리고 애리조나 대법원 판사 Frederick J. Martone 은 주 대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을 필자의 학급에 와서 강의를 해준다. 언론기관, 특히 Arizona Republic 등의 기자나 편집인 등을 초대해 언론법과 관련된 고충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학생들과 들곤 한다.

## V. 언론법 교수와 자격요건

미국에서 언론법을 강의하는 교수의 자격요건이라고 해서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언론법을 중심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그렇지 않은 교수에 비해서 유리한 면이 많은 것이다. 특히 기본적인 법에 대한 강의, 연구 등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반드시 학부 언론법 강의에 체계적인 병학 교육이 하나의 교수요건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최근의 학부 언론법을 강의하는 교수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7%가 언론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24%는 법학 박사학위를, 그리고 10%는 언론학 박사학위와 병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교수는 현재 언론학 박사학위를 갖고서 법대에 다니고 있으며 병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면서 언론학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응답자 중 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sup>34)</sup>

필자의 경우에 석사와 박사학위를 언론법 중심으로 이수했으며 교수를 하면서 법대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곤 했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법을 공부할 목적으로 Yale Law School 에서 법학석사(M.S.L.) 학위공부를 했다. 법에 대한 연구는 강의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하여 대학원학생시절부터 영국 미국 등에 있는 언론학 내지 법 평론 지에 글을 내곤 했다.

Colorado 대 학교의 언론법 교수인 Robert Trager 교수는 언론학 박사학위와 법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경우로, Minnesota 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고 Southern Illinois 대학교에서 언론법 교수를 하다가 부교수 재직 중에 Stanford Law School 에서 법을 공부했다. 13년간 언론법 변호사를 하다가 다시 언론법 교수로 돌아왔다. 최근에 정년퇴직한 미국 언론법의 권위자인 Donald Gillmor(Minnesota) 교수는 전형적인 언론법 박사였다. 물론 대학원에서 언론법을 중심으로 공부했고 교수를 하면서 South Dakota 와 Columbia Law School 에서 법강의를 들곤 했다. 그의 공저인 Mass Communication Law 는 지난 30년에 걸쳐 6판을 거듭하고 있다.

흥미 있는 최근의 현상은 법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변호사들이 언론학을 공부하러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언론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언론법 교수가 이런 저런 목적으로 법대에 진학해서 법학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법을 보다 깊이 알고 언론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1~2 과목의 언론법을 듣고서 알맹이 있는 언론법 강의를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법철학, 헌법의 역사, 정치제도 등에 대한 언론학 외의 강의를 듣고 다양한 법의 기능을 이해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한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경우에 대학원 시절에 역사학과와 정치학과 등의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했다. 물론 "Legal and Governmental Research in Mass Media" 강의는 언론법 강의, 연구에 말할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언론법 교수의 자격과 구비조건은 언론학 박사학위나 법학 박사학위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학위소지는 최소한의 교수자격 요건일 뿐이다. 언론법의 끊임없는 변화는 언론법 교수의 간단없는 강의 교재의 수정, 보완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학술회의(AEJMC, ICA 등)나 언론법 전문잡지(Communication Law Policy, Media Law and Practice (London) 등)의 구독 그리고 언론법 전문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의 참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상당수의 언론법 교수 등은 Practising Law Institute 가 주관하는 매년 11 월의 Communications Law 세미나에 참석해서 미국 언론법 전문변호사, 교수 등의 강의를 듣고 언론법의 최신 현안문제를 이해한다. 그리고 ABA 의 언론법 회의에 참석하여 전문적인 정보를 구해 강의에 이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언론법에 대한모임 등이 수시로 열린다.

필자가 관여하는 Maricopa County Bar Association Law Media Committee 는 매년 최소한 한 번씩 언론법에 관련된 애리조나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언론전공 학생, 교수, 언론단체, 변호사, 판사들의 상호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기회가 언론법을 강의하는 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구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언론법의 현장감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 VI. 결론 및 요약

미국의 언론학 교육에서 언론법은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언론학 초기부터 인정을 받아왔다. 언론법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사실 미국의 민주정치와 사회 제도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상할 것은 없다. 한편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언론기관의 막강한 영향력과 언론에 의한 일반 시민의 피해 등을 일반 국민과 언론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알려는 노력의 산물이 바로 언론법의 근본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언론법의 교과과목의 지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 대부분의 미국대학에서 언론학 전공학생의 경우에 언론법은 필수과목이다. 그리고 대체로 언론법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도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주요 분야인 명예훼손 등이 여전히 강의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이와 관련한 새로운 주제가 언론법 강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언론법이 이제는 언론학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Arizona 주립대학교의 법과대학, Stanford 와 Yale 법대 등이 언론법을 혹은 유사과목을 독립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Washington, D.C.)의 법과대학은 언론법전문 법학박사학위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Florida 대학교의 언론학 대학의 경우는 법대와 공동프로그램으로 언론법 공동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이 같은 언론법 중심의 프로그램이 생기는 것도 지만 20 여 년에 걸친 언론법 성장(학계와 법조계, 언론계)의 한 증거일 것이다. 또한 1978 년에 나오기 시작한 Media Law Reporter(BNA)는 언론법의 판례가 이제는 하나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축적되었음을 뜻한다.

언론법 강의는 학교의 성격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교수개인의 취향과 관점 그리고 배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론법 전공학생의 주된 관심사인 "어떻게 하면 법적인 문제를 피하면서 주어진 언론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언론법 교수의 기본철칙이다. 언론법 과목은 어느 학교를 불문하고 가장 힘든 어려운 과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다른 과목보다 훨씬 많은 독서량과 난해한 판결문 이해는 상당수의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법 교과서는 대체로 우수한 자질의 언론법 전공교수들이 씬으로 해서 호평을 받고 있다. 물론 언론법 교과서의 절대적인 의존은 언론법 교수들에게 절대금물이다. 현실적으로 교과서가 급변하는 법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수들이 따로 나름대로 자료집을 이용하고 있다. 이때에도 A/V 테이프를 이용해서 강의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언론법 관련 변호사나 판사 그리고 언론인을 초대해서 강의의 현실감을 더할 수 있다.

한편 언론법 교수는 꾸준한 자기향상(강의의 교재와 정보 그리고 연구)을 할 의무가 있다. 각 교수의 열의와 시간적인 여유와 학교당국의 배려가 어느 정도 허용된다면 미국에서의 언론법 교수의 질적인 강의는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다. 사실 미국처럼 언론법을 여유있게(?) 강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수준급 시설과 조건이 있는 곳이 있는지 필자는 가끔 자문해 본다. 어느 면에서 미국 언론법의 눈부신 성장은 미국의 법 및 언론의 역사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그 결과를 차치하고라도 미국 언론학에 있어서 언론법의 미래는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법의 조화라는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당면하면서 전통적인 언론 자유의 제문제들을 계속 탐구하리라고 기대된다.

## 주

1) Albert Alton Sutton, Education for Journalism in the United States From its Beginning to 1940 (New York : AMS Press, 1945), p.7.

2) Ibid., p.11.

3) Ibid., p.12.

4) William R. Lindley, Journalism and Higher Education: The Search for Academic Purpose (Stillwater, Okla.: Journalistic Services, 1975), pp.12, 19, 29.

5) Joseph Pulitzer, "Planning a School of Journalism—The Basic Concept in 1904", in Heinz Dietrich Fischer & Christopher G. Trump, eds., Education Journalism (Bochum, West Germany : Studienverlag Dr. N. Brockmeyer, 1980), p.45.

6) Ibid., pp.46-47.

7) William G. Hale, The Law of the Press, 3rd ed. (ST. Paul: West Publishing Co., 1948), p.2.

8) Betty Medsger, Winds of Change : Challenges Confronting Journalism Education (Arlington: Freedom Forum, 1996), p.80.

9) Planning for Curricular Change: A Report of the Project on the Future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Education (Eugene: School of Journalism, University of Oregon, 1984), p.91.

10) See generally C. Thomas Dienes, Lee Levine & Robert C. Lind, *Newsgathering and the Law* (Charlottesville: Michie, 1997).

11) See generally Dwight Teeter, Jr., Don R. Le Don & Bill Loving, *Law of Mass Communication* (New York: Foundation Press, 1998), PP.573–646.

12) Kyu Ho Youm, "Libel : The Plaintiff's Case", in W. Wat Hopkins, ed., *Communication and the Law* (Northport : Vision Press, 1998), p.93.

13) See Yale Law School 1997–1998 (New Haven : Bulletin of Yale University, 1997), p.43.

14) *Ibid.*, pp.54–55.

15) Craig Sanders, "Facing the Challenge of Teaching Communications Law : Fitting Past, Present and Future into one cours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in Baltimore, Md., in august 1998), p.4.

16) William F Swindler, *A Bibliography of Law on Journalism*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7), p.8.

17) See Samuel D. Warren &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ard Law Review* 193(1890).

18) Sanders, *op. cit.*, p.10.

19) *Ibid.*

20) Kyu Ho Youm, "Toward a 'Global' Focus", *Media Law Notes*, Winter 1993, pp.1–2.

21) 376 U.S. 254(1964).

22) 418 U.S. 323(1974).

23) 475 U.S. 767(1986)

24) 497 U.S. 1(1990).

25) 556 F.2d 113(20 Cir. 1997).

For a detailed update on the "neutral reportage" doctrine as a libel defense in American law, see Joseph A. Russomanno & Kyu Ho Youm, "'Neutral Reportage' and Its Second Decade : A Marketplace Perspective", 3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438 (1998).

26) 181 N.E.2d 105(III. 1962)

27) 442 N.E.2d 195(111. 1982)

28) See *Bachchan v. India Abroad Publications, Inc.*, 20 *Media L. Rep.* (BNA) 1051 (N.Y. Sup. Ct. 1992).

29) See *Matusевич v. Telnikoff*, 26 *Media L. Rep.* (BNA) 2473 (Md. 1997).

30) 849 F.2d 876 (4th Cir. 1988)

31) See *Friedman v. Israel Labour Party*, 25 *Media L. Rep.* (BNA) 2153 (E.D. Penn. 1997)

32) Hopkins, *op. cit.*, p.1.

33) Sanders, *op. cit.*, pp.11–12.

34) Louise W. Hermanson, ed., 1998 Direction of Scholarty Legal Researchers (n.p.: AEJMC Law Division, 1998), p.3.

- 미국 남일리노이대학교 (Ph.D.), 예일법과대학(M.S.L.)
- 미국신문학회(AEJMC) 및 국제언론학회(ICA) 언론법 회장역임
- 저서 "Suing American Media In Foreign Courts" 외 다수
- 현재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월터 크롱카이터 언론대학 언론법 주임교수